인천센터 공고 제2024-2호

(재)여성기업지원센터 인천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
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.

2024년 2월 27일
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장

□ 모집개요

○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, JK루체스타 5층

○ 선정규모 : 4개사 ※ 적격자 미달시 선정규모 축소할 수 있음

○ 모집공간 : 개별 창업보육실

○ 모집기간 : 공고일 ~ 2024. 3. 11(월) 18:00까지

○ 입주자격

- 예비여성창업자(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)

※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후 4주 이내 여성기업확인서 반드시 제출 (미등록 및 미제출시 강제퇴거)

-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

※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요건

○ 입주업종 :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(별표 2, 3 참조)

○ 신청자격제한

-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
-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
-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
  (사업의 승계, 기업의 형태의 변경, 폐업후 사업재개)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해당하는 경우 (별표 1 참조)

○ 추진절차*

입주기업 모집공고		1차 서류심사		2차 발표심사		입주계약
공고일~3.11.	→	3.12.~3.15.	→	3.18. 이후 (예정)	→	3월 말
입주기업 모집공고		1차 서류심사 (적격여부 검토)		2차 발표심사(PT)		입주승인 대상 입주계약 및 입주

*세부일정은 인천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□ 입주공간 및 입주조건

○ 입주기간 : 계약일로부터 1년(경영평가 후 최대 3년 이내 입주가능)

※ 입주기간 1년 이후 연장 요청 시 연장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입주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○ 입주공간 : 약 28~30㎡(전용면적)

○ 입주호실 및 입주부담금

(단위 : 원)

구 분	임대면적(㎡)	전용면적(㎡)	보증금	관리비	비 고
개별	약40~50 (12~15py)	약28~30 (8~10py)	1,500,000	**월** 약 280,000~ 350,000	- 부가세 별도 - 임대면적 기준 계약 - 20,000원/평 - 사무형 공간 - 무료주차 1대 - **전기, 수도, 공용관리비 포함**

* 센터 사정에 따라 임대 공간 변경 가능

* 졸업 혹은 퇴거시 보증금 반환

* 공과금 과다발생시 관리비 산정방법 변경할 수 있음

□ 입주기업 지원내용

○ 중소기업 지원시책,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등

○ 경영애로지원 전문 컨설팅_경영, 판로, 수출 등 상시 상담

○ 회의실, 포토스튜디오 및 인터넷 전용선 제공

□ 선정 기준

○ 창업자 역량, 기술성, 사업성 등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

□ 모집 절차

○ 1차 : 서류심사

※ 서류전형 통과여부는 개별 통지

○ 2차 : 발표심사

- 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
- 프리젠테이션(5분 내외) 및 질의 · 응답

□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

○ 접수기간 : **2024. 3. 11(월) 18:00까지**

- 서류 및 발표심사 후 합격자 개별 통보

○ 제출서류

- [공통] 입주신청서(소정양식) 1부.
- [공통]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.
- [공통]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동의서(소정양식) 1부.
- [공통]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(신용점수 必기입) 1부.
- [공통] 최근 1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예비창업자 생략) 1부.
- 사업장 업종코드 전체 조회 스캔본(홈택스 조회 가능).
-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및 매출증빙서류(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확인자료) 1부.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지식재산권 보유 및 각종 인증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.

※ 제출 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됨(누락 시 부적격 처리)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접수방법 및 문의

○ 접수방법 및 접수처

- 이메일 접수(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)

  날인된 서류를 전자우편 gwkim@wbiz.or.kr으로 제출

  (전자우편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)

○ 문의 :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

- 전화 032-822-9622

붙 임 [별표 1]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[별표 2] 첨단관련 산업 업종(85개) 리스트

[별표 3] 지식산업 업종(58개) 리스트

[별표 4] 정보통신산업 업종(16개) 리스트

[별표 5] 인천센터 도면

[별지 1]입주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
[별표 1]

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업종분류	산업표준 분 류	업종	비고
금융 및 보험업	K64~66	금융관련 업종	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
부동산업	L68~69	부동산 임대, 중개, 장비 및 기계 임대, 음반 및 비디오 등 임대업 등	
숙박 및 음식점업	J55~56	숙박업, 음식점업, 주점업	호텔업,휴양콘도 운영업,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
무도장 운영업	91291	무도장, 콜라텍, 댄스홀	
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	골프장 운영업, 스키장 운영업	
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	9124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	
기타 개인서비스업	96	이용 및 미용업, 욕탕, 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 세탁 및 장례, 예식관련 서비스업 및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 등	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
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		

※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< 산업표준 분류 >

- 55 숙박업(호텔업, 여관업, 휴양콘도 운영업,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
- 56 음식점 및 주점업(일반 음식점업, 기관구내식당업, 출장 및 이동 음식업, 기타 음식점업, 주점업, 비알콜 음료점업)
- 64 금융업(은행 및 저축기관, 투자기관, 기타 금융업)
- 65 보험 및 연금업(보험업, 재 보험업, 연금 및 공제업)
-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(금융지원 서비스업,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)
- 68 부동산업(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)
- 69 임대업;부동산 제외(운송장비 임대업,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,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, 무형재산권 임대업)
-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(미용,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,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)

[별표 2]

첨단관련 산업 업종(85개) 리스트

*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

순번	업종코드	업종명
1	20119	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
2	20132	염료, 조제 무기안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
3	20202	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
4	20421	계면활성제 제조업
5	20493	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
6	20495	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
7	204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
8	20501	합성섬유 제조업
9	21102	생물학적 제제 제조업
10	21210	완제 의약품 제조업
11	21300	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
12	22292	플라스틱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
13	23121	1차 유리제품,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
14	23122	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
15	23211	정형내화요업제품 제조업
16	23222	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
17	23995	탄소섬유 제조업
18	24221	동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
19	24290	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
20	25911	분말야금제품 제조업
21	25934	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
22	26111	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
23	26112	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
24	26121	발광 다이오드 제조업
25	26129	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
26	26212	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
27	26219	기타 표시장치 제조업
28	26222	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
29	26223	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
30	26295	전자감지장치 제조업
31	26410	유선 통신장비 제조업
32	26421	방송장비 제조업
33	26429	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
34	26519	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
35	27111	방사선 장치 제조업
36	27112	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
37	27192	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
38	27199	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
39	27211	레이더,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
40	27212	전자기 측정,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

순번	업종코드	업종명
41	27213	물질 검사,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
42	27215	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
43	27216	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
44	27219	기타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
45	27301	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
46	27302	사진기,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
47	27309	기타 광학기기 제조업
48	28111	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
49	28112	변압기 제조업
50	28114	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
51	28119	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
52	28121	전기회로 개폐, 보호장치 제조업
53	28123	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
54	28202	축전지 제조업
55	28422	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
56	28903	교통 신호장치 제조업
57	28909	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
58	29120	유압기기 제조업
59	29131	액체 펌프 제조업
60	29133	탭, 밸프 및 유사장치 제조업
61	29141	구름베어링 제조업
62	29172	공기 조화장치 제조업
63	29199	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
64	29222	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
65	29223	금속 절삭기계 제조업
66	29229	기타 가공 공장기계 제조업
67	29269	기타 섬유,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
68	29271	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
69	29272	디스플레이 제조업 기계 제조업
70	29280	산업용 로봇 제조업
71	29292	고무,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
72	29294	주형 및 금형 제조업
73	29299	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
74	30110	자동차용 엔진 제조업
75	30121	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
76	30122	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
77	30310	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
78	30331	자동차용 신품 동력 부품 제조업
79	30332	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
80	30391	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
81	30392	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
82	30399	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
83	31311	유인 항공기,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
84	31312	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
85	31322	항공기용 부품 제조업

[별표 3]

지식산업 업종(58개) 리스트

*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분류

순번	업종코드	업종명	비고
1	39001	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	제2항 제14호 환경정화 및 복원업
2	39009	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	
3	58111	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	제2항 제7호 출판업
4	58112	만화 출판업	
5	58113	일반 서적 출판업	
6	58121	신문 발행업	
7	58122	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	
8	58123	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	
9	58190	기타 인쇄물 출판업	
10	59111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제2항 제6호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
11	59112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12	59113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13	59114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
14	5912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제2항 제15호
15	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제2항 제16호
16	70111	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	제2항 제1호 연구개발업
17	70112	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	
18	70113	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	
19	70119	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	
20	70121	전기·전자공학 연구개발업	
21	70129	기타 공학 연구개발업	
22	70130	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	
23	70201	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	
24	70209	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	
25	71310	광고 대행업	제2항 제21호
26	71391	옥외 및 전시 광고업	제2항 제22호
27	71393	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 등 작성업	제2항 제5호
28	71400	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	제2항 제17호
29	71531	경영 컨설팅업	제2항 제11호
30	72111	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	제2항 제4호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
31	72112	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	
32	72121	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
33	72122	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
34	72129	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
35	72911	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	
36	72919	기타 기술 시험, 검사 및 분석업	
37	72921	측량업	
38	72922	제도업	
39	72923	지질 조사 및 탐사업	
40	72924	지도 제작업	

순번	업종코드	업종명	비고
41	73201	인테리어 디자인업	제2항 제8호 전문디자인업
42	73202	제품 디자인업	
43	73203	시각 디자인업	
44	73209	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	
45	73902	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	제2항 제12호
46	73903	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제2항 제18호
47	73904	물품 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제2항 제19호
48	7390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*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(관리기관 홈페이지에 해당산업 게시해야 함	제2항 제27호
49	74100	사업시설 유지・관리 서비스업	제2항 제23호
50	75320	보안 시스템 서비스업	제2항 제24호
51	75991	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제2항 제25호
52	75992	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	제2항 제13호
53	75994	포장 및 충전업	제2항 제9호
54	76400	무형 재산권 임대업	제2항 제20호
55	85301	전문대학	제2항 제10호
56	85302	대학교	
57	85650	직원 훈련기관	
58	85669	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	

※ (그외) 시행령 제2항 제26호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업(이 항 제7호,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[별표 4]

정보통신산업 업종(16개) 리스트

*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분류

순번	업종코드	업종명	비고
1	58211	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제3항 제2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2	58212	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3	58219	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4	58221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5	58222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6	61210	유선 통신업	제3항 제5호 전기통신업
7	61220	무선 및 위성 통신업	
8	61291	통신 재판매업	
9	61299	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	
10	62010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제3항 제1호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11	62021	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	
12	62022	컴퓨터시설 관리업	
13	62090	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	
14	63111	자료 처리업	제3항 제3호 자료처리,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15	63112	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및 관련 서비스업	
16	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	제3항 제4호

[별표 5]

인천센터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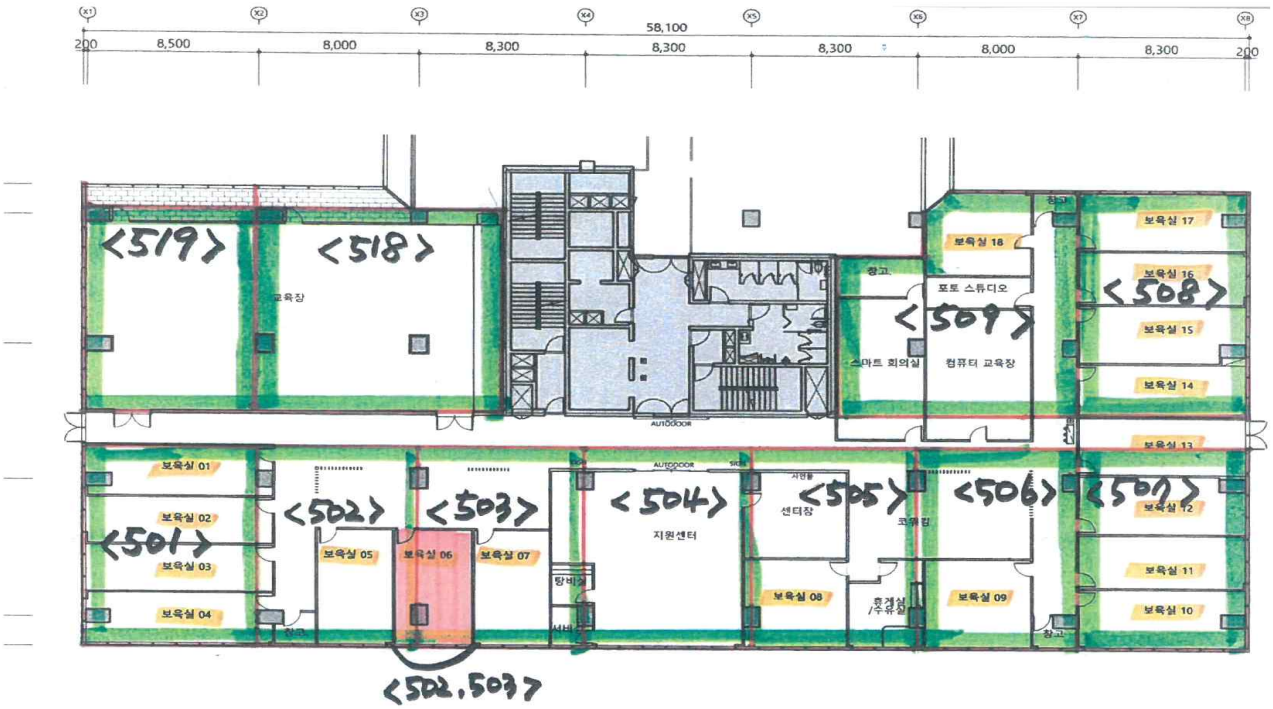

창업보육실(개별실)
※싱크대설치 無, 가구, 사무기기 등 미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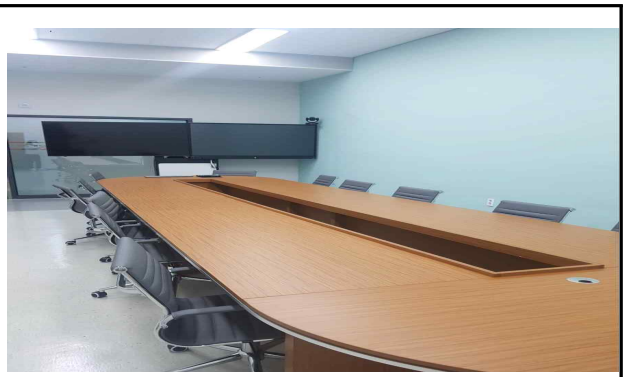

공용공간(회의실)

센터 전경 (외부)